■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부과내역)

* 점유번호 : 71426982

대상자	성명 강*묵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670815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8, ***** ** ****	전화번호	010******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120)		비고
					재산가액 (원)	사용요율 (%)	연간 사용료 (원)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 (원)**	
부과내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철도용지	6,441	286.88	722,340,000	5%	36,117,000	2019.05.01 ~ 2019.12.31	29,091,5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철도용지	6,441	286.88	722,340,000	5%	36,117,000	2020.01.01 ~ 2020.08.25	28,183,102	
합계				573.76			72,234,000		57,274,60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07월 31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07월15일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장

강상묵 귀하

첨부서류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작 성 방 법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 내역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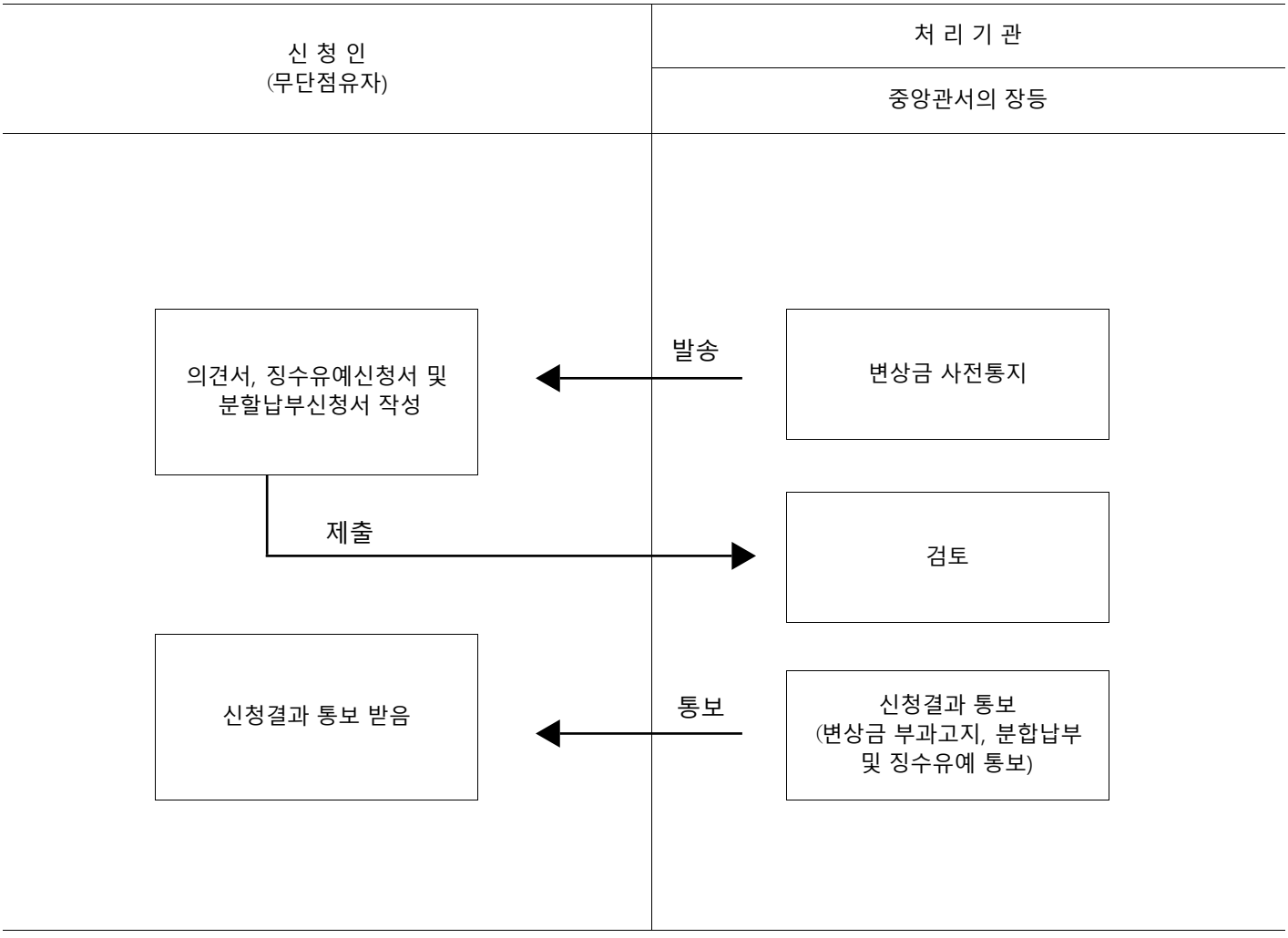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 내용	의 견

<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앙관서의 장등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징수유예 결정
결정 통보 ←	결 재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